

# 광고주 협약서

## 광고주 정보

- 쇼핑몰명/쇼핑몰 URL :
- 상호/대표자명 :
- 사업자등록번호 :
- 연락처 :

## 협약내용

상기 광고주는 주식회사 카카오가 운영하는 Daum 쇼핑하우 및 유관 네트워크 지면(이하 "쇼핑서비스" 라 한다)에서 광고주의 상품(광고주가 쇼핑서비스에서 판매하는 모든 재화 및 용역, 그리고 쇼핑서비스에서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함. 이하 같다)을 등록하여 광고하고, 노출하는 제반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보증하고 협약합니다.

1. 광고주는 "쇼핑서비스"에 등록하여 노출하거나 노출을 신청한 상품이 상표법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,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진정상품이며, 광고주가 표시·광고한 내용과 일치(최신성 유지)하는 것임을 보증합니다.
2. 광고주는 상품을 "쇼핑서비스"에 등록하여 광고 및 판매를 함에 있어서 제 3자의 성명 및 초상 이미지, 저작물 등을 사용 할 경우 해당 사용에 대한 적법한 권한과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, 관련 제 3자의 성명권, 퍼블리시티권 및 지적재산권, 사업 및 영업상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고,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.
3. 광고주가 관련 법령 및 본 협약서의 내용 등을 위반하여 상표권과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 등의 권리자 또는 소비자 등 으로부터 주식회사 카카오가 민·형사상의 청구를 받는 경우, 광고주는 광고주의 비용과 책임으로 주식회사 카카오를 면책시키고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 해당 분쟁을 해결할 것을 협약합니다.
4. 광고주가 관련 법령 및 본 협약서 등을 위반하여 주식회사 카카오가 광고주에게 "쇼핑서비스" 이용 중지 및 광고 의 중단, 구상권 행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, 광고주는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할 것을 협약합니다.

년 월 일 대표이사 (인)

## 주식회사 카카오 귀중

본 협약서는 주식회사 카카오가 광고주에게 상표권 및 제 3자의 성명권, 퍼블리시티권 등의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사전 검수 의무를 다하고자 하였으나, 광고주의 사정으로 인해 제출 받지 못한 경우에 사용됩니다.